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359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세 관련서류의 송달장소 및 수령권자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포함(오기형의원안)	2

I. 개요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3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9. 14.
- (3) 회 부 일 : 2026. 9.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세 관련서류의 송달장소 및 수령권자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포함(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서류의 송달(제8조) ☐ 서류의 송달 방식 -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제1항)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제2항) ·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 · 대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징수하기 유리한 연대납세의무자를 명의인으로 송달 · 다만, 납부 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 상속이 개시된 경우(제3항)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제4항) · 납부 고지·독촉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u>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u>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u>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u>에게 송달(제 5항)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u>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u> 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u>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u> 에게 송달 ☐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 오기형의원안 2026. 9. 14. 발의(의안번호 제21359호)

□ 개정안은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출범에 맞추어, 구금된 사람에 대한 국세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 및 수령권자에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자에게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특례임.¹⁾

그런데 중수청은 경찰조직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수사기관으로 “국가경찰관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²⁾ 현행 규정만으로는 중수청에 수용될 자에 대한 송달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서류의 수령권자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2) “국가경찰관서”를 일률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등 경찰조직상의 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참고로 중수청은 별도의 법률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소속 수사인력도 경찰 공무원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경찰관서와 구별됨.

□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세 관련 서류의 송달 공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국세 관련 서류의 송달은 납세고지의 효력과 불복기간의 기산점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 수사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불복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³⁾

개정안은 중수청에 수용된 사람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국가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주체가 경찰 외에 중수청 등으로 다원화되는 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국세기본법」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동일한 내용이 이해식위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⁴⁾ 이해식의원안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관계 법률을 일괄 정비하면서, 부칙에 동 개정안과 동일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양 법률안이 모두 의결될 경우 동일 조문에 대한 중복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중복사항을 조정할 필

3) 국세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은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61호, 2026. 8. 25. 발의).동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임

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9
